

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 월 10 일

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

성현우



여수시 조례 제2285호

붙임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을 “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8조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</p>		<p>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.</p>		